

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

※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
√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처리 일자	처리 기간 경찰서장 허가 7일 사·도경찰청장 허가 10일
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직업	운전면허번호
	주소	전화번호

관리책임자 (예술품용 총포 등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성명	주민등록번호	휴대전화번호	성명	주민등록번호	휴대전화번호

총포내용	총종(銃種)· 형식	[]산탄외대 []산탄상하쌍대 []산탄수평쌍대 []삼연쌍대 []라이플 []공기총스프링 []공기총(펌프) []공기총(가스) []권총회전 []권총착탈 []공간 []원절 []중절 []레바 []수동장전 []자동장전 []기타				
	총명	제조국명		명칭		
	구경	공칭		총신의 길이		
		번(구경)		cm		
	대체총신	실측치수		총 전체의 길이		
		mm		cm		
	총번(銃番)	구경		총신의 길이		
		번(구경)		mm		
적합실탄 공포탄명	제 호		총중량		kg	
	탄창장전 탄수		탄창장전 탄수		개	

용도	[]호신 []수렵 []유해조수 구제 []사격경기 []어획 []건축 []공업 []기타 산업 []신호·구명 []도살·마취 []시험·연구 []예술품용					
----	---	--	--	--	--	--

입수경위	양 도 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			
		직업 또는 직위	주소					
		허가청	업소명					
		허가번호	제	호	년	월	일	
		양도양수연월일			년	월	일	
	수입내용	수입면장번호	제	호	수입연월일	년	월	일
		수입국명		수입지				
	임 대	임대업소명		임대업소 주소				

보 관	총포 소지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보관합니다.		보관연월일			
	보관처		보관책임자			

허가증 발급		조사복명		신원·전과 조회	
--------	--	------	--	-------------	--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
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경찰청장·경찰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체검사서(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, 타정총·가스발사총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)	수수료 3,000 ~ 5,000원
	2.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. 사진(가로 2.5cm, 세로 3cm) 5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(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,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6.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유의사항

- 총포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 - 기존 허가 총포의 경우는 총포 소지 허가증
 - 소지 허가 총포로서 상품화할 경우에는 총포 소지 허가증 반납증명 서류
 - 수입 또는 양도 총포의 경우에는 수입면장
 -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
-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사격경기용 총포: 사격선수확인증
 - 수렵용 총포: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
 - 유해조수구제용 총포: 제1종 수렵면허증,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
 -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: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

처리절차

